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제3자전송요구권은 국민 체감도, 민간의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전송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중으로, 보건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만 우선 시행 중이던 제3자전송을 고용·교육 분야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6.2월)에 따른 본인전송 범위 및 전송자의 의무를 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지정요건·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감독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도의 원활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및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영 제42조의2 및 제42조의4 개정)
- 국민 체감도, 민간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제3자 대상정보전송자 및 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교육·고용 분야로 확대

나.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본인전송 범위 및 전송자 의무 조정(영 제42조의4, 제42조의6 및 제42조의16 개정)

- 정보주체가 전송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조정, 정보전송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항,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등재 근거 마련

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지정요건, 보호위원회의 감독 범위 조정(영 제42조의9 및 42조의15 개정)

- 공공기관의 중계전문기관 및 일반·특수전문기관 겸업 금지제한 적용 제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강화,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현장점검 근거 마련

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활한 운영(영 제13조 및 제46조 개정)

-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는 범위 조정, 중계전문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2026. 7월)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30. ~ 8. 1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정정·삭제·처리정지”를 “정정·삭제, 전송, 처리정지”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사립학교 중 직전 연도 4월 1일 기준으로 재학생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 학교

5. 고용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고용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나.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8호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

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

제42조의4제1항제2호 중 “산업기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산업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교육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교육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교육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생성된 정보주체의 학적, 수강 및 성적, 졸업 등에 관한 정보

나.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교육 관련 정보

5. 고용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고용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고용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고용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고용·직업 정보

나.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구직 신청정보 및 입사 지원정보 등의 정보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까지와 유사한 고용 관련 정보

제42조의6제6항 단서 중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또는 에너지정보전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을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본인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전송하도록”을 “수집하기 위하여 전송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을 “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42조의6제6항 단서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항”을 “사항(다만, 본인전송요구의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42조의9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2조의11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적용”을 “가목 및 나목을 적용”으로 한다.

제42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요구할”을 “제출 또는 현장점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한정한다)을 요구할”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을 “제출 또는 현장점검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으로 한다.

제42조의16제1항 중 “제3자전송요구”를 “전송요구”로, “제3자대상정보 전송자”를 “정보전송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직접 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의16제3항(중전의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전송플랫폼”을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으로 한다.

1. 제2항의 자료

제46조제1항 중 “요구”를 “요구, 법 제37조의2에 따른 결정 거부 및 설명 등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보호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계전문기관”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를 “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u>정정·삭제·처리정지</u> 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5. (생략) ②·③ (생략)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정정·삭제, 전송, 처리정지</u> -----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① (생략) ② 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교육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u>

<신 설>

나.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8호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
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구
인자 및 구직자에 대한 정
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 중 개인정보
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
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3. (생략)

②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

3. (현행과 같음)

② -----

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제3자 전송정보”라 한다)를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교육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교육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교육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교육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생성된 정보주체의 학적, 수강 및 성적, 졸업 등에 관한 정보

나.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교육 관련 정보

5. 고용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

<신설>

의 고용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고용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고용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고용·직업 정보

나.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구직 신청정보 및 입사 지원정보 등의 정보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까지와 유사한 고용 관련 정보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① ~ ⑤ (생략)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⑥ -----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본인대상 정보전송자가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또는 에너지정보전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이 대신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⑦ (생략)

⑧ 일반수신자는 제3자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처리 체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
하는 행위

2. ~ 7. (생략)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중계 전문기관을
통하여 본인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 전문기관

⑦ (현행과 같음)

⑧

1. _____

 _____ 수집하기 위하여
 전송하도록 _____

2. ~ 7. (현행과 같음)

8. _____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

⑨ · ⑩ (생략)

⑪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본인전송정보, 보건의
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에
너지전송정보 및 자율전송정보
(이하 “전송요구대상정보”라 한
다)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
야 한다. 다만, 제3자대상정보전
송자의 경우 중계전문기관이 대
신 보관할 수 있다.

1. 제42조의5제3항 각 호의 사
항

2. 3. (생략)

⑫ · ⑬ (생략)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생략)
② 중계전문기관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업무를 함께 수행해서는 안 된다. <단서 신설>

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

⑨·⑩ (현행과 같음)

⑪ -----

-----. 다만, 제42조의6제6항
단서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
자 및 -----.

1. ----- 사
항(다만, 본인전송요구의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한한다)

2. 3. (현행과 같음)

⑫ · ⑬ (현행과 같음)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
관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

	<u>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①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①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제정능력을 모두 갖출 것(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u>적용하지 않는다</u>)	3. ----- ----- ----- ----- <u>가목 및 나목을 적용</u>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구에 대한 정보전송자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일반수신자의 시설·기	② ----- ----- ----- ----- -----

술 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u>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u>	----- ----- ----- ----- ----- <u>제출 또는 현장점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한정한다)을 요구할</u> ----- <u>제출 또는 현장점검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보호위원회는 <u>제3자전송요구</u> 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제3자대상정보전송자</u>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 ----- <u>전송요구</u> ----- ----- ----- ----- <u>정보전송자</u> ----- ----- -----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직접 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자료

	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 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제3자대 상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 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u>개인정 보전송플랫폼에</u>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 ----- ----- ----- ----- ----- <u>개인정보 전송지원플랫폼에</u> ----- -----.
1.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 인정보 전송 내역	1. 제2항의 자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 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정정·삭제,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법 제3 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등의 <u>요구</u> (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 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 는 열람등요구를 한 사람이 본 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 ----- ----- ----- ----- <u>요구, 법 제37 조의2에 따른 결정 거부 및 설 명 등 요구</u> ----- ----- -----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u> 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 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 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u>보호위원회,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중계전문기관</u> --- ----- ----- ----- ----- ----- <u>주민등 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번호를 포함한다)</u> ----- ----- <u>등록전산정보자 료(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 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 다)</u> 를-----

< 의안 소관 부서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연 락 처	(02) 2100 - 3172